##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9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언주·정성호·정진욱

민형배 · 소병훈 · 김현정

이강일 • 민병덕 • 김영배

강준현 • 조정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 줌으로써 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 발생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발생하고 있음.

또한 광업진흥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채굴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채굴인가권자인 광역자치단체장과 개별 인·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불인가 처분에도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공익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광업법은 광업진흥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니 인근 거주지 국민의 환경권, 생활권 권익보호나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개발을 노린 악용 사례 방지에 규제가 미비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 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 당 시·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도의 처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 노천채굴은 금지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u>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u>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		
		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도의 동의		
		를 얻어야 하고 시·도의 처분		
		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		
		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		
		역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불허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		
		권 설정의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 노천채굴은 금지한다.		
<u>②·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